

// 행복한 도시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 서울시철도 //

- 직장 내 성희롱 “ZERO化” 를 위한 -
성희롱·성매매 방지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추진계획

2016. 2.



경영지원실
(인사처)

- 직장 내 성희롱 “ZERO化” 를 위한 -

성희롱·성매매 방지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추진계획

성희롱 예방과 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하여 직장내 바람직한 성 윤리문화 정립하고, 구성원의 올바른 의식변화를 꾀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1항 및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예방지침(예규 제57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II 추진 방향

-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한 기본 추진사항 이행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매매 방지 조치의 실효성 강화
-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 강화
- 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식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보
-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양성평등 의식 확산

III 2015년 추진실적

-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2015.7.24)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 성희롱 예방교육 및 내용 개선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강화**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촉(2015.12.31)**

- 권00 교수 등 2명(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추천)
- 성희롱 관련 법 및 제도에 관한 자문 및 공정성 확보

□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2015.7.15. ~7.31)**

- 대상자 : 여직원 총 505명
- 방 법 : 1:1 심층면접 및 전화 메일 등
- 결 과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교육 강화 요구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구 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자체 직장교육	2회/년	2회/년	2회/년	2회/년
외부전문강사 초빙교육	2회 (‘15. 4.23) (‘15.11.26)	1회 (‘15. 4.23)	2회 (‘15.10.19) (‘15.10.20)	2회 (‘15.10.19) (‘15.10.20)
외부 위탁교육 (고충상담원)	2회/2명 (양성평등교육원)	-	-	-
서울시 예방교육 (3급 이상 보직 간부)	4회 136명			

※ 3급 중간관리자 대상 성희롱 특별교육 실시 : 3회 424명

□ **성희롱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 · 운영** : 고충상담원 남녀 각 1명씩 지정

※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1건)**

직원 A(남)는 카톡으로 음란 동영상 여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본 직원 B(여)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

→ 직원 A 징징계 ‘정직2월, 성희롱예방 8시간 교육이수 명령’ 처분

□ **성희롱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 SMART 게시판『복무성희롱신고센터』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 위원장 포함 8명

IV 2016년 추진계획

1. 노사 합동 성희롱·성매매 방지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 교육대상 : 총 5,100명(3급이하), 20회 실시
- 교육방법 : 시청각 활용한 전문강사 강의 (별도계획 수립시행)
- 소요예산 : 211백만원
- ※ 2015년 3급 중간관리자 대상 성희롱 특별교육 실시 : 3회 424명

□ 소속별 직장교육

- 교육대상 : 임원 및 소속장 포함 전직원(현원대비 교육 이수율 100% 확보)
- ※ 업무직, 기간제, 견습직원, 사회복지무원 등 포함

○ 교육 횟수 및 시간

구 분	내 용
교육내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횟수	각 반기 1회 (총 8회)
교육시간	회당 1시간 이상(년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창의아카데미 사이버 강의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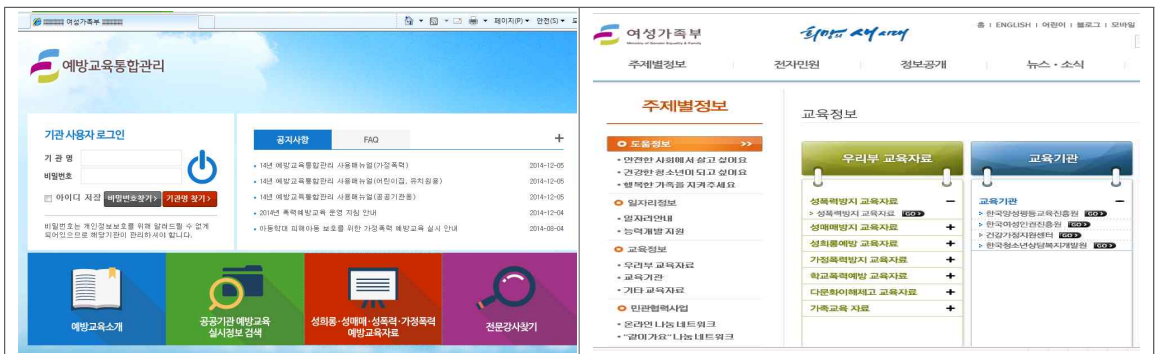
- 교육별 반기 1회 사이버 강의 이수
 - 상반기 3월~6월 / 하반기 8월~11월
- 신규입사 및 복직직원은 입사 또는 복직 후 2개월 이내에 사이버 교육 이수
- 창의아카데미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는 별도 자체교육 실시
 - 기간제 및 견습직원 등 : 해당부서 주관
 - 사회복지무원 : 비상계획처 주관

○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및 처리절차,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인지 관점에서의 건전한 성의식, 성문화 창달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자료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 (shp.mogef.go.kr)**

- 예방교육통합관리/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자료
- 여성가족부/주제별정보/교육정보/우리부 교육자료



2. 성희롱·성매매 방지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실효성 강화

□ **부서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정례적 모니터링 실시**

- **시 기** : 연1회(7월 중)
- **방 법** : 조사단위 부서원 메일링, 심층면접 조사 병행실시
- **후속조치** : 조사결과 전 직원 공유 및 예방대책 수립

□ 성희롱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운영 및 전문화 추진

○ 고충상담원(3명) : 인사처 남·녀 각 1명(6311-2192, 2196),노동조합 추천 1명

○ 주요업무

-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성희롱 피해자 상담·조언 및 고충접수
-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고충처리절차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및 대리인의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 • 서면, 전화 방문, 통신 등
상담 및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정보제공 •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실시 •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완료
조사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사장 보고 • 필요 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회부
인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전환, 보직변경, 징계 등 조치 •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결과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결과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 성희롱고충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4명(고충상담원 : 2명, 여성관리자 또는 노동조합추천 : 2명)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 법·판례 및 고충상담기법 등
- 소요예산 : 40만원 (10만원×4명)

□ 성희롱고충 신고방법 적극 홍보 및 활성화

- 기관장 Hot Line(ceo@smrt.co.kr)
- 성희롱 신고 전용메일(7979@smrt.co.kr)
- 성희롱 고충 상담전화(☎6311-2192, 2196)

- SMART 신고 게시판(게시판-공지사항-인사-복무성희롱신고센터)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목 적** :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필요시 개최)
- **구 성** : 위원장(인사담당 실장) 포함 위원 8명
 - 사장 2명, 노동조합위원장 3명 지명, **외부전문가 2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지명)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6/10 이하**로 구성
 - 위원선정은 성희롱의 성격, 행위자의 직급 및 직렬 등 고려
- **역 할** : 피해자와 행위자간 성희롱 여부 분쟁발생시 회의소집/판단

□ **성희롱 관련자 엄중 조치**

- **성희롱 가해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 등 엄중조치**

비위도의도 및 과실 비위의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폭력 다. 성폭력(미성년자) 라. 기 타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해임 - 정직	해임 - 정직 해임·강등 파면·해임 감 봉	정직·감봉 정 직 해임 - 정직 견 책	견 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경고·주의

※ **성희롱 등 성폭력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징계양정 대폭 강화(2016.1/4분기 완료 예정)**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9조의 2(징계의 감경)**
 -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범죄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

3. 폭력예방 관련사례 홍보 등을 통한 인식 제고

- **관련법령 개정 시 개정내용 홍보**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실제 사건 및 관련판례 등 전파**
- **교육 및 홍보용 자료 개발·배포**
 - SMART 게시판-공지사항-인사-기타 인사 관련

- 외부전문가 교육 동영상 게시, 여성가족부 등 제작자료 배포

V

행정 사항

- 소속직원 폭력예방 추진계획 공람 및 관련교육 이수(전부서)**
 - 창의아카데미 사이버 강의 이수 안내
- 창의아카데미 강의 콘텐츠 제작 및 개설 협조(인재개발원)**
 - 교육 진행 및 이수실적 통계자료 등 관리·협조
- 자체교육 실적 보고(해당부서 및 비상계획처)**
 - 기간제 및 견습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자체교육 실시 후 실적 제출('16.12.10한)
- '16년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인사처)**
 - '16년도 추진실적 서울시 제출 및 여성가족부'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입력.